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단계적 일상 회복 기준 및 실행방안(<u>10차 개정</u>) 2021.12.17(금)

■10차 개정 [<u>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/학생지원팀 2021.12.17(금)</u>]

구 분			단계적 일상 회복 1차		
방역패스 의무도입®			식당·카페, 백남학술정보관, 단과대학(원) 열람실·독서실·스터디카페, 고시반(준비반), 실내체육시설, 박물관, 공연장 (백신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만 출입가능)		
발열검사			전 건물 무인(자율) 운영		
수 업			시기	내 용	
			2021학년도 겨울계절학기	이론 및 이론실습 교과목은 원격수업,실습 교과목은 대면수업 시행	
			2022학년도 1학기	대면수업 시행	
시 험			대면 시험 원칙		
회의·집합· 모임·행사·	부서장 승인권한		▶ 실내·외 1~49명 : 백신접종 구분없음		
(식사·다과 제공 금지, 뒷풀이 금지)®	감관위 승인권한		▶ 실내·외 50~299명 : 참석자 전원 백신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 ▶ 실내·외 300명 이상 행사 개최 금지 (경영활동 등 학교 필수 행사시 예외)		
대관행사 (식사·다과 제공 금지, 뒷풀이 금지)©	부서장 승인권한		▶ 실내·외 1~49명 : 백신접종 구분없음		
	감관위 승인권한		▶ 실내·외 50~299명 : 참석자 전원 백신 접종 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		
	신청절차		 실내·외 300명 이상 행사 개최 금지 (국가 필수 시험 등 필수 시험시 예외) 1. 50명 이상 교내 연구(교수)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① 요청(주관) 부서 → ② 승인 요청(학생지원팀) →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(승인) → ④ 대관 요청(주관부 서에서 관재팀) 2. 50명 이상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(행사) ① 국가(공공)기관 → ② 승인 요청(관재팀) →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(승인) → ④ 대관 승인(관재팀) 		
백남학술 정보관	학 기 중	주중	▶ 열람실 08:40~24:00 ▶ 자료실 : 09:00~22:00		
		토	▶열람실 09:00~24:00 / ▶자료실 : 휴실		
		일	▶열람실 09:00~24:00 / ▶자료실 : 휴실		
(방역패스 적용)	방학	주중	▶열람실 09:00~24:00 / ▶자료실 09:00~19:00		
		토	1	▶열람실 09:00~24:00 / ▶자료실 : 휴실	
		일	ı	▶열람실 09:00~24:00 / ▶자료실 : 휴실	
단과대학/대학원 열람실 및 라운지			백남학술정보관 기준내에서 부서장 재량으로 운영 가능(방역패스 적용)		
학생자치 시설 (학생회실, 동아리실)	동아리실		주중 조건부 개방(<mark>사적모임 기준내에서 가능</mark> , 09:00~19:00 허용), 주말(공휴일) 폐쇄		
	학생회실		주중 조건부 개방(6㎡당 1명,	09:00~19:00 허용, 단 총학생회실 22시까지 허용), 주말(공휴일) 폐쇄	
부서, 연구소(실)			정상 근무(시 <mark>차 출퇴근제 활용)</mark>		
인조잔디축구장 농구장·테니스장			주중 조건부 개방 (09:00 ~ 20:30 허용), 주말(공휴일) 폐쇄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(운영) 가능		
식당·카페(<mark>방역패스 적용</mark>)			21시까지 운영 ,방역수칙 준수, 교직원 식당 등 단체급식성격의 식당은 방역패스 적용 제외		
사적모임			정부 지침 최대 인원수 내에서 모임 가능		

* 공통사항: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

④ 18세 이하/예외자 적용 제외, 2022.02.01.(화)부터 11세 이하/예외자만 적용 제외

[®] 원칙적으로 출장뷔페, 케이터링 등 식음료 금지, 단 개인별 음료수 가능하며 호텔 및 식당에서 행사시 식사 가능

^{© 🗚} 동일하게 적용

- ①마스크 착용
- ②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(QR-PASS 또는 수기)
- ③출입자 증상 확인(발열체크 등)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
- ④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(*최소 1m 간격 유지)
- ⑤손소독제 비치
- ⑥환기 및 소독
- * 확진자 발생으로 동일 공간 접촉자 등교가능 기준
 - 자가격리 대상자: 정부 (보건소)의 지시를 따름
 - 능동, 수동감시 대상자: 1. PCR 검사결과 음성, 2. 무증상 이면 등교 가능
 - 그 외 접촉자: 1. PCR 검사결과 음성, 2. 무증상 이면 등교 가능
 - 증상이 있다면 증상이 없어질 때 까지 등교중지

[법적 근거] ▶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34조(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·시행),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, 제59조(영업정지 등), 제77조~제80조(벌칙), 제83조(과태료)

[근거] ▶한양대학교 감염병 관리 규정

※ 개정이력

- ■최초개정 [<u>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/한양보건센터 2020.09.02(수)</u>]
- ■3차개정 [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/한양보건센터 2020.10.16(금)]
- ■4차개정 [제9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/학생지원팀 2020.11.10(화)]
- ■4차부분개정: 2020.11.24.(화) 2단계 비대면 수업원칙
- ■5차개정 [<u>제10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/학생지원팀 2020.12.07(월)</u>]
- ■6차개정 [제14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/학생지원팀 2021.07.08(목)]
- ■7차개정 [제14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/학생지원팀 2021.09.02(목)]
- ■8차개정 [제15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/학생지원팀 2021.11.04.(목)]
- ■9차개정 [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/학생지원팀 2021.12.06(월)]
- ■10차개정 [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/학생지원팀 2021.12.17(금)]